

# 2021년 당진시 주거실태조사 조사지침서

2021. 8.





# 목 차

## I. 조사 개요 ..... 3

1. 조사연혁 ..... 3
2. 법적 근거 ..... 3
3. 조사목적 ..... 3
4. 조사주기, 기준시점 및 조사기간 ..... 3
5. 모집단 및 표본설계 ..... 3
6. 조사대상 ..... 4
7. 조사항목 ..... 4
8. 조사방법 ..... 5
9. 결과공표 ..... 5
10. 조사체계 및 인력 ..... 6
11. 추진일정 ..... 7

## II. 현장 조사 ..... 8

1. 조사원의 기본자세와 역할 ..... 8
2. 가구 관리 요령 ..... 11
3. 안전수칙 및 현장조사 요령 ..... 15
4. 조사표 작성요령 ..... 17

## III. 내용 검토 ..... 45

1. 공통사항 ..... 45
2. 표지사항 ..... 45
3. 부문별사항 ..... 45

## 부 록 ..... 49

1. 주요 사례별 처리 방법 ..... 49
2. 본 통계와 관련된 주요용어 및 해설서 ..... 52
3. 조사표(견본) ..... 57
4. 통계법 등 주요 조항 ..... 69



# 조사 개요

## 1 조사연혁

- 2021. 6. ~ 7. 통계청 기술지원(표본설계) 자문·검토협의
- 2021. 7. 당진시 주거실태조사 신규승인(협의)신청

## 2 법적 근거

- 「주거기본법」 제20조(주거실태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주거실태조사의 실시)
- 「통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른 승인통계

## 3 조사목적

- 당진시의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일반가구 및 주거취약계층가구의 주거실태 및 주거복지 소요 파악

## 4 조사주기, 기준시점 및 조사기간

- 조사주기 : 5년
- 조사 기준 시점 : 2021. 8. 6. 0시 현재 기준
- 조사 기간 : 2021. 8. 6. ~ 8. 31.(26일간)

## 5 모집단 및 표본설계

### 가. 모집단(범위)

- 목표모집단: 조사 기준 시점에 당진시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가구
- 조사모집단: 일반적 가구특성을 갖추지 못한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 등 집단가구를 제외한 일반가구

## 나. 표본설계

### □ 표본추출틀

-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의 당진지역 조사구 명부
  - 아파트조사구 및 일반 조사구만을 대상으로 함

### □ 층화

- 행정구역별로 독립적 추정이 가능하도록 1차, 2차로 층화
  - 1차 층화 : 읍부, 면부, 동부 3개 지역
  - 2차 층화 : 일반 조사구, 아파트 조사구

### □ 분류지표 및 추출방법

- 주거복지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변수들을 분류지표로 선정
  - 조사구별로 주택유형은 1차 분류지표, 2차와 3차 분류지표는 조사구별 1인 가구 비율, 만65세 이상 비율, 주택 소유 가구 비율 중 각 권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변수를 선정하여 결정
- 추출방법 : 행정구역별 층화 및 분류지표에 따라 정렬 후 층별로 표본조사구 추출
- 표본가구 확정 : 표본조사구의 가구에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무작위로 최초가구를 설정하고 그 가구를 포함하여 연속으로 10가구 조사

## 6 조사대상

- 조사단위 : 가구(가구주)
- 조사대상 : 일반적 가구특성을 갖추지 못한 기숙시설 및 특수사회시설 등 집단가구를 제외한 당진시 거주 일반가구 표본 2,000가구(1인 가구, 장애인 가구,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가구, 공공임대주택 거주가구 등 주거취약계층가구 포함)
  - 외국인가구 포함
- 대상규모(표본크기) : 200개 조사구, 조사구당 10가구
- 대상지역 : 충청남도 당진시
- 성별구분 : 구분

## 7 조사항목

- 총 5개 부문 42개 문항
- 가구의 주거실태 : 11문항
  - 현재 주택 유형(거처종류), 거주층, 주거용 사용면적, 사용 방 수 및 거실 수, 주거시설 유무 및

종류와 사용형태, 겨울철 적절한 실내 온도 유지 여부, 여름철 적절한 실내 온도 유지 여부, 현재 집의 상태 평가, 건강 위협 요소, 주택 수리 필요 여부, 거동불편 가구원 유무

○ 지역의 주거환경 : 5문항

- 당진시 거주이유, 당진시 거주기간, 현재 주거환경 평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 동네에 필요한 공공시설

○ 가구의 주거비 부담 : 7문항

- 현재 거처와 직전 주택 점유형태, 주거비 지출 유형, 타지주택 소유 여부, 주거비 부담 정도, 현재 집에 임대인 거주 여부, 임차료 상승으로 인한 이사 경험, 임차보증금 및 월세 상승에 대한 대처 계획

○ 주거복지정책 : 8문항

- 전반적인 주거 만족도, 주거 관련 어려움, 주거복지 프로그램 인지 여부와 필요 여부, 필요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 공유주택 거주 의사, 주거기준 설정 필요성, 임대차3법에 대한 찬반여부

○ 가구 현황 : 11문항

- 가구형태, 가구원수 및 가구원별 연령, 취약가구원 여부, 가구주 성별, 가구주 교육 정도, 가구주 혼인 상태, 가구주 경제활동 여부, 월평균 가구 총소득,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수급가구 여부

## 8 조사방법

○ 조사방법 : 조사 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대인면접 방식으로 진행함. 타계식 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대면 면접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예: 코로나 19 방역 지침 등)에 자계식 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함

○ 대상선정 : 확률표본

## 9 결과공표

○ 공표주기 : 5년

○ 조사결과 제공 : 2021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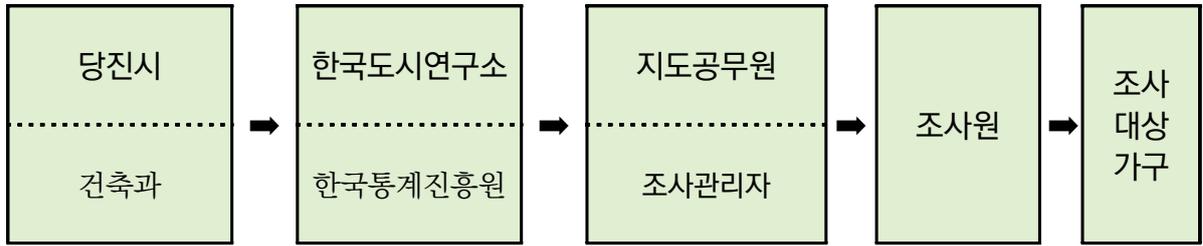
○ 공표방법 : 보도자료, 「당진시 주거실태조사 통계보고서」 발간

○ 공표지역 : 당진시

- 공표범위 : 행정구역별, 주택유형별, 점유형태별, 전용면적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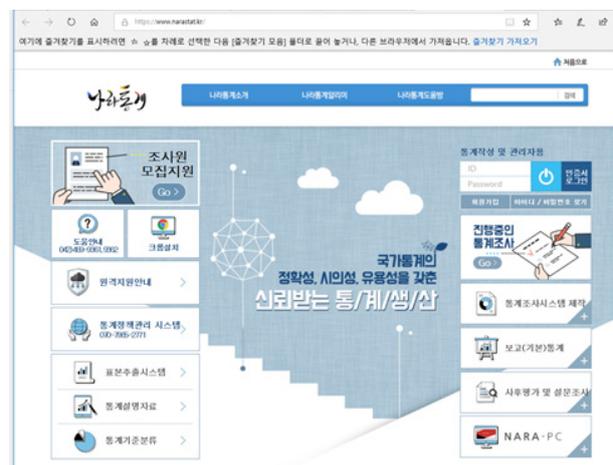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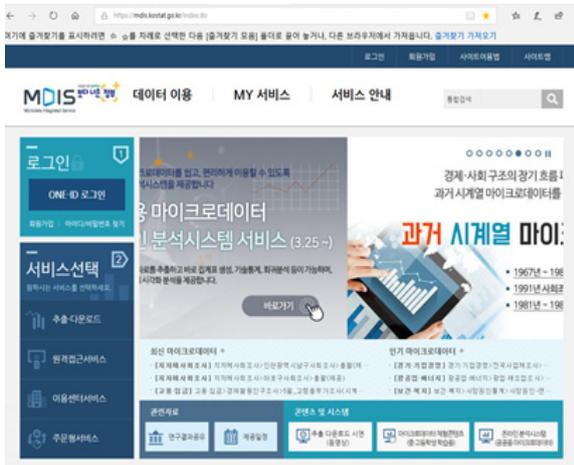
## 10 조사체계 및 인력

### ○ 조사체계



### ○ 표본설계 및 통계승인신청을 위한 ID 작성 및 권한 신청

- 표본설계를 위한 MDIS 접근 : <https://mdis.kostat.go.kr/index.do>
- 통계승인신청 : <https://www.narastat.kr/>



### ○ 조사인력

- 조사관리자 : 2명
  - ▶ 조사관리자는 조사원 6~7명 관리, 조사원은 약 150가구 조사
- 조사원 : 13명
  - ▶ 조사원은 통계청 조사에 조사원 경력이 있는 당진시 주민 채용
  - ▶ 조사일정 계획에 따라 조사 시작 2~3주 전에 조사원 확보

내용	일정
조사항목 선정을 위한 의견수렴(전문가 및 지역단체)	2021. 6.
조사표, 표본설계, 조사기획에 대한 자문 및 의견수렴	2021. 6. 14. ~ 6. 23
통계청 전문가 표본설계 및 조사표 자문회의	
조사표 확정 및 종합실시계획 수립	2021. 6. 14 ~ 6. 30
행정자료 우선활용 판단 의뢰(통계청 행정자료관리과)	
표본설계 및 표본추출 완료	
통계승인신청(당진시청→충청지방통계청) 및 승인완료	2021. 7. 1 ~ 7. 31
조사 준비	2021. 8. 1 ~ 8. 5
조사 홍보(주민센터, 공동주택 관리소), 현수막 설치	
조사원 선발(당진시 지속발전가능담당관 빅데이터팀 협조)	
표본조사구 요도 및 명부자료 준비, 조사표류 인쇄	
예비조사(조사구 확인)	
조사원 교육 및 본조사 실시	2021. 8. 3 ~ 8. 31
조사원 교육	2021. 8. 3
조사원 물품 배부 및 준비조사	2021. 8. 5
본조사 및 실사지도(26일간)	2021. 8. 6 ~ 8. 31
조사내용 검토, 조사표 전산 입력 및 내검	2021. 8. 6 ~ 9. 7
조사결과 집계 및 분석	2021. 9. ~ 10.
조사결과 공표 및 보고서 발간	2021. 12.

## 1 조사원의 기본자세와 역할

### 가. 조사원의 기본자세

조사과정에서 조사직원의 성실한 조사업무 수행은 조사결과의 신뢰도, 타당성 제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여 조사에 임하도록 한다.

- 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조사지침서 등을 미리 숙지하고, 조사에 임할 때는 조사원증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 특히 가구를 방문할 때는 단정한 복장과 바른 언행으로 가구에서 거부감이 없도록 조사의 취지를 잘 설명하여 자발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불량한 옷을 입거나, 화장을 너무 짙게 하는 것도 피해야 하며 혹시 모자를 쓰고 다니다가도 대문에 들어서기 전에 모자를 벗어야 한다. 이러한 사소한 행동에도 응답자는 대단한 호의를 갖기 때문이다.
- 조사 기간 중에는 조사업무에만 전념하여야 하며, 반드시 조사요령 교육을 받은 사람이 조사하여야 한다.
-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기타자료를 이용하여 탁상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 지도공무원이나 조사관리자의 감독과 지시에 따라야 하며 조사 진행사항을 조사관리자에게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 완성된 조사표는 매일 조사관리자에게 검토 받아야 한다.
- 조사 상 곤란한 문제점, 특별한 사고(질병 또는 기타사유)로 정상적인 조사업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조사관리자에게 즉시 보고, 지시를 받는다.
- 조사원으로 채용된 자가 조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의 수당은 조사원 도급계약서 산정 기준에 의한다.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이나 가구에 대한 내용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통계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 관련법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제39조(벌칙)

※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34조 (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종사자(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
- ②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 ③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 ④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 ⑤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 다만, 통계작성기관 내부에서 내용검토 절차 또는 통계작성기법에 따라 조사오류 또는 입력오류 등을 수정 또는 변경한 자를 제외한다.

○ 조사표 및 잔여 답례품 미제출 등 조사원으로서의 의무 불이행시 형법 제356조(업무상 횡령과 배임)에 따라 징계 또는 형사고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될 수 있다.

- 조사원은 이 조사의 기본 자료를 수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조사원이 얼마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정확한 조사여부에 따라 이 조사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다.
- 조사원은 가구를 방문하면 가구원에게 방문 목적을 잘 설명하여 경계심을 없애야 한다. 조사의 정확성은 일차적으로 응답자를 대하는 조사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 조사원이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환경에 전부 들어맞는 한가지의 방법이란 있을 수가 없으므로, 조사원은 여러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인내심과 조사요령이 있어야 한다.

## 나. 조사원의 역할

### □ 조사원

- 가구관리종합표, 가구명부, 조사구 요도, 조사표 등 조사용품을 수령한다.
- 가구를 방문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응답 내용을 조사표에 기입한다.
- 응답자에게 답례품을 지급하고 「답례품 지급명부」의 수령자란에 서명을 받는다.
- 「가구관리종합표」에 매일 조사 활동 상황을 기입한다.
- 전산입력 및 내검과정에서 발생한 착오 조사표를 재확인하고 수정 및 보완한다.

○ 조사용품

- 조사표 및 표지
- 조사구 요도
- 조사원증
- 조사지침서
- 가구명부, 가구관리종합표
- 포스트잇(부재중 알림)
- 조사협조문(안내장)
- 답례품 및 지급명부
- 필기도구, 가방 등

○ 조사완료 후 조사표를 순서대로 편철하여 조사관리자에게 제출한다.

□ 조사관리자

○ 조사관련 용품 관리 및 배부

- 조사용품을 수령한 후 조사원에게 배부한다.

○ 조사원의 전반적인 업무수행 지도

- 담당 조사원별 조사 진척률을 파악하고 조사가 부진한 조사구를 독려한다.
- 「가구관리종합표」를 통해 조사원의 활동상황을 점검한다.
- 조사 불응가구 설득 등 조사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 조사원의 질의사항 중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질문은 조사책임자와 협의하여 답변하고, 문제점은 수시로 조사관리자 및 조사책임자에게 보고 후 조치한다.
- 반드시 교육받은 조사원이 직접 조사를 하는지 수시로 파악하고, 다른 사람이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 후 조치한다.
- 중도 포기 조사원에 대해서는 조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 대체하고, 방치된 조사구가 있는지 수시로 파악한다.
- 조사불능인 가구를 파악하여 가구대체 승인을 조사책임자에게 요청한다.

○ 조사표 내용검토 및 조사관련지침 전달

- 조사가 완료된 조사표는 조사원별로 검토한다.
- 검토 후 내용이 잘못된 경우에는 조사원에게 보완토록 지도한다.
- 수시로 전달되는 조사관련지침 변경사항 등을 조사원에게 전달한다.

○ 조사표 취합 및 관리

- 완료된 조사표를 취합하여 편철하고, 답례품 지급내역을 확인한다.

○ 조사표 입력내용에 대한 내용검토를 하고 오류를 수정한다.

## 2 가구관리요령

### □ 조사구 경계 확인

#### ※ 조사구란?

: 조사대상 지역에 대하여 식별이 확실한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지도상에서 일정한 가구 수가 포함되도록 분할한 조사담당구역(보통 1조사구에 10가구 해당)

- 본조사 전 준비조사 때 표본으로 선정된 조사구를 직접 방문하여, 배부된 「가구명부」의 거처와 일치하는지 파악한다.

### □ 가구명부 작성 및 조사대상 가구

※ 표본조사구 내 가구에 일련번호를 부여한 후 표본명부에 기재된 시작가구를 포함하여 연속하여 10가구를 조사한다.

- 「가구명부」의 변동사항은 빨간색 펜으로 수정(두 줄 그음)하며, 수정 시에는 해당 사유를 비교란에 기입한다.
- 「가구명부」가 없는 신축아파트의 경우 조사관리자의 지도를 받아 작성한다.

#### ○ 시작번호의 의미

- 시작번호는 「가구명부」 상의 '가구번호' 순서이다.
- 시작가구가 「가구명부」 상 '빈집'이라도, 최초 가구로 설정한다.
- 시작번호가 「가구명부」 상의 전체 가구 수보다 클 경우, 명부상 1번 가구를 시작가구로 해서 순차적으로 10가구를 조사한다.



## ○ 조사대상 가구 선정(본조사 가구)

- 조사대상 가구의 선정기준은 '가구번호'이며, 시작가구로부터 순차적으로 10가구를 선정한다.

### ※ 조사대상 가구 선정 시 주의할 점

- ▶ 가구명부 상 존재하지 않지만, 준비조사 시 실제로 가구가 존재할 경우 새로운 가구번호를 부여하고 조사대상 가구로 선정한다.
- ▶ '가구명부 상' 빈집'이지만, 준비조사 시 실제로 사람이 가구에 거주할 경우 새로운 가구번호를 부여하고 조사대상 가구로 선정한다.
- ▶ 신축 또는 재건축 등으로 새로운 거처가 생긴 경우 새로운 거처번호를 부여하고 조사대상 거처로 선정한다.

- '불응가구', '불능가구', '빈집' 등이 존재하여 시작가구로부터 10가구를 조사하지 못할 경우, 연이어 다음 가구를 조사한다.
- 조사구내 '불응·불능가구'나 '빈집'이 다수로 10가구 조사가 어려운 경우 해당 조사구의 병합 조사구의 가구 명부를 요청한다.

## ○ 조사대상 가구 찾기

- 「가구명부」상의 주소와 현재 주소의 일치 여부를 판단하여, 조사대상 가구인지를 결정한다.
- 「가구명부」상 기재된 가구주 성명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가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 ○ 가구대체 사유

- 응답거부(불응가구) : 가구원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 장기부재(불능가구) : 가구가 존재하지만 해외여행,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해 장기간 전체 가구원이 부재중인 경우
- 빈집, 철거 : 이사 등으로 인한 전출 가구이거나 재개발 등으로 인해 해당 가구가 철거된 경우, 빈집은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을 말하며 신축되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주택도 포함

## ○ 가구대체 절차

- 조사관리자에게 교체를 요청하면 대체사유가 적절한지 확인 후 교체한다.

## □ 가구관리종합표 작성

### ○ 한국통계진흥원에서는 가구관리종합표를 출력하여 조사원에게 제공한다.

### ○ 조사원은 다음을 참고하여 「가구관리종합표」를 작성한다.

- 조사구번호, 시작번호, 거처·가구번호 : 「가구명부」에서 확인한다.
- 주소 : 「가구명부」에서 '거처·가구번호'로 주소를 찾아서 기입한다.
- 응답자 성명 : 조사에 응답하고 답례품을 수령한 사람의 성명을 기입한다.
- 가구 방문 : 가구를 방문한 날짜와 시간을 기입한다.
- 조사가구여부 : 불응가구, 불능가구, 빈집 중 하나를 선택한다.

행정읍면동

**2021년 당진시 주거실태조사  
가 구 관 리 종 합 표**

조사원	조사관리자

조사구 번호					
--------	--	--	--	--	--

시작 번호	
-------	--

일련 번호	거처·가구 번호	응답자 성 명	가구 방문				조사가구 여 부
	주 소		1차	2차	3차	4차	
1	-		( )일	( )일	( )일	( )일	불응가구 <input type="checkbox"/>
			시	시	시	시	불응가구 <input type="checkbox"/> 빈 집 <input type="checkbox"/>
2	-		( )일	( )일	( )일	( )일	불응가구 <input type="checkbox"/>
			시	시	시	시	불응가구 <input type="checkbox"/> 빈 집 <input type="checkbox"/>
3	-		( )일	( )일	( )일	( )일	불응가구 <input type="checkbox"/>
			시	시	시	시	불응가구 <input type="checkbox"/> 빈 집 <input type="checkbox"/>
4	-		( )일	( )일	( )일	( )일	불응가구 <input type="checkbox"/>
			시	시	시	시	불응가구 <input type="checkbox"/> 빈 집 <input type="checkbox"/>
5	-		( )일	( )일	( )일	( )일	불응가구 <input type="checkbox"/>
			시	시	시	시	불응가구 <input type="checkbox"/> 빈 집 <input type="checkbox"/>
6	-		( )일	( )일	( )일	( )일	불응가구 <input type="checkbox"/>
			시	시	시	시	불응가구 <input type="checkbox"/> 빈 집 <input type="checkbox"/>
7	-		( )일	( )일	( )일	( )일	불응가구 <input type="checkbox"/>
			시	시	시	시	불응가구 <input type="checkbox"/> 빈 집 <input type="checkbox"/>
8	-		( )일	( )일	( )일	( )일	불응가구 <input type="checkbox"/>
			시	시	시	시	불응가구 <input type="checkbox"/> 빈 집 <input type="checkbox"/>
9	-		( )일	( )일	( )일	( )일	불응가구 <input type="checkbox"/>
			시	시	시	시	불응가구 <input type="checkbox"/> 빈 집 <input type="checkbox"/>
10	-		( )일	( )일	( )일	( )일	불응가구 <input type="checkbox"/>
			시	시	시	시	불응가구 <input type="checkbox"/> 빈 집 <input type="checkbox"/>
11	-		( )일	( )일	( )일	( )일	불응가구 <input type="checkbox"/>
			시	시	시	시	불응가구 <input type="checkbox"/> 빈 집 <input type="checkbox"/>
12	-		( )일	( )일	( )일	( )일	불응가구 <input type="checkbox"/>
			시	시	시	시	불응가구 <input type="checkbox"/> 빈 집 <input type="checkbox"/>

### 3 안전수칙 및 현장조사 요령

#### 가. 안전수칙

##### □ 재난재해 발생 시 대응 방법

○ 기본 방향 : 조사방법 변경 및 행정자료 활용강화 등을 통해 현장조사의 정확성 제고에 최대한 노력한다.

##### ○ 조사방법

- 조사원이 조사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대인면접 방식으로 진행한다. 타계식 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대면 면접조사가 불가능할 경우(예: 코로나 19 방역 지침 등)에 자계식 조사방법을 병행하여 진행한다.

\* 재난재해 발생지역 이외 인근지역의 응답자가 비대면 조사를 원할 경우 비대면 조사 실시 가능

- (현장방문) 조사책임자는 현장조사의 정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해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현장방문 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하고, 가능한 한 비대면 조사로 수행토록 한다.

- (사례별 대응) 대응지침에 따라 재난재해 피해로 인한 조사불능, 조사곤란, 조사거부 등에 적절히 대처하고, 사후에 보완토록 한다.

- (통계조사검증 및 자체확인점검) 피해지역의 피해복구가 완료되어 현장조사가 정상화될 때까지 피해지역 내 조사대상처에 대한 통계조사검증 및 자체확인점검 잠정 유예한다.

##### ○ 현장조사 시 유의사항

- 피해조사대상처의 피해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하며, 무리한 조사수행으로 응답자가 반발심을 갖지 않도록 노력한다.

- 현장조사직원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현장조사 업무를 수행한다.

##### □ 현장조사 안전수칙

○ 조사대상 가구 방문 및 면접조사 시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소독티슈 항시 구비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업무 중 발열 및 인후통 등 코로나 19 의심 증상 발현 시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귀가하며, 증상이 지속될 경우 코로나 19 검사를 진행한다.

○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하기 전에 안전한 조사수행을 위해 안전용품(휴대용 손전등)이 모두 준비되었는지를 철저히 확인한다. 준비조사 기간에는 담당 조사구의 지형, 주택의 배치, 개를 기르는지 여부, 교통량, 경찰 지구대(파출소) 등의 위치를 확인한다.

○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처를 확보한다.

- 조사 중 긴급 상황 발생 시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연락처(조사관리자, 담당공무원, 인근 경찰 지구대)를 수첩 등에 기록한다.

- 개인 휴대전화에 비상연락처를 입력한다. 조사 당일의 방문 예정지(야간 방문 지역 등)를 가족에게 알려주고, 도중에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 사항을 가족에게 알린다.

○ 방문 위험지역을 사전에 파악한다.

- 시골지역의 경우 이장을 통해 마을지역에서 동떨어진 가구(가축농장, 개사육장) 등 위험 우려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가급적 야간조사를 피한다. 부득이 야간조사를 실시할 경우 이장이나 마을 자율방범대 등의 도움을 받아 동행조사 할 수 있도록 한다.
- 도시지역의 경우 인근 경찰 지구대를 통해 범죄 발생지역이나 범죄발생 우려지역 등을 미리 확인해두며, 특히 이웃 주민들과 교류가 없는 가구 등은 반드시 동행조사를 하도록 한다.

나. 면접조사 시 유의사항

○ 조사대상 가구를 방문하기 전에 조사용품을 철저히 확인한다.

- 가구관리종합표, 가구명부, 조사구역도, 조사표, 조사지침서, 답례품 지급명부 등
- 조사표를 스스로 작성하여 직접 제출을 원하는 가구는 비밀보호용 봉투를 같이 배부한다.

○ 조사구의 특성에 따라 가구방문 시간대를 정하며, 가구와 약속한 방문일자와 시간은 반드시 준수한다.

-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은 가급적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대상가구에 양해를 구한 후 방문하여 조사한다.
- 조사구에 상가지역이 있으면 혼잡한 시간은 피해서 방문한다.
- 아파트, 연립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 조사 시에는 관리인에게 미리 알리도록 한다.
- 대문이나 현관문이 열려있더라도 함부로 들어가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한다.

○ 가구를 방문하면 먼저 어디에서 무엇을 하러 왔는지를 밝히고, 조사 목적과 조사된 자료가 추후에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여 응답자의 성실한 답변을 유도한다.

- 언어는 존댓말을 사용하되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을 써야 하며, 가급적 또박또박 천천히 말한다.

○ 응답자가 답변을 거부할 경우에는 조사내용이 통계작성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으며 법으로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을 설명하여 응답에 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이때 무엇보다도 조사원의 태도가 중요하므로 응답자가 불쾌한 말을 하더라도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
- 최선을 다해 응답자를 설득하였지만 계속 응답을 거부할 경우에는 너무 오래 끌지 말고 적당한 시기에 일단 물러난 후 조사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다.

○ 방문한 가구가 가구명부의 조사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에 임한다.

○ 이웃 등 가구원이 아닌 사람이 있는 곳에서 조사하는 것은 피하며, 조사에 불필요한 질문이나 행동은 하지 않는다.

○ 조사를 완료하기 전에 응답자가 망설이면서 답변했던 것과 확실치 못한 추상적인 답변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한다.

- 조사가 완료되면 응답자에게 정중하게 조사 협조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한다.
- 조사불응, 장기부재 등에 대한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조사관리자, 담당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등이 불응가구를 설득하도록 한다.
  -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응가구가 발생하는 경우와 조사대상 가구의 장기부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조사원은 지체 없이 조사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조사관리자는 사실 확인 후 표본가구를 대체하여야 한다.

## 4 조사표 작성요령

### 가. 조사표 작성 시 유의사항

#### □ 조사표 작성 대상 및 기준

- 본 조사의 조사대상은 '가구'이며, 해당 가구를 대표할 수 있는 가구주나 가구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성인 가구원에게 응답을 받는다.
  - 기본적으로 조사문항에 대한 응답은 '가구'를 기준으로 한다.
  - 단, '가구주'에 대한 질문의 경우 가구주를 기준으로 한다.
  - 당진시 거주기간의 경우 가구원을 기준으로 한다.
- '가구원'의 경우 주민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구성원을 의미한다.

#### □ 조사표 작성 방법

- 검정색 또는 청색펜을 사용한다.
- 조사표 수정 시 수정한 내용을 확인 가능하도록 정정사항은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하지 말고 빨간펜으로 두 줄을 그은 후 아래에 기입한다.
- 복수응답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는 객관식 문항은 1가지만 기입한다.
- '기타 (        )'에 표시할 경우, 괄호 안에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입한다.
- 주관식(open) 문항은 글자를 정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반드시 정자로 기입한다.
- 조사단위 금액은 만원으로 하며, 만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 숫자 기입 시 끝자리를 맞추고, 숫자 앞의 공란은 비워 둔다.
- 숫자 기입 시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0'으로 표시하지 말고, 공란으로 남겨 둔다.
- 조사 진행 시 항목별 지시문에 따른 해당 문항으로의 이동에 주의한다. 각 문항의 보기 항목에 지시문이 없는 경우는 바로 다음 문항으로 이동한다.
- 작성된 설문지는 현장에서 작성내용을 확인하여 착오기입, 문항 및 항목 누락, 관련 문항 간에 논리적 오류 등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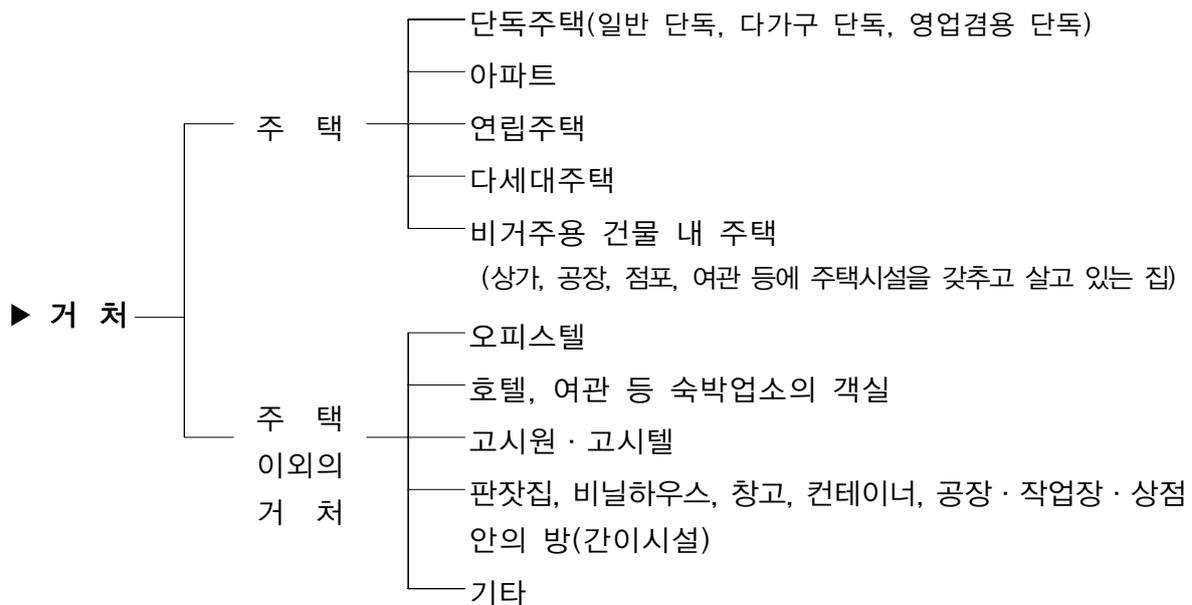
- 내용검토 기간에 응답가구에 재질의를 할 경우에는 조사에 관한 전체 내용을 다시 이해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반드시 현장에서 점검한다.
- 설문지는 작성과정이나 작성 후 타인의 눈에 띄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한다.
  - 조사기간 중에 설문지가 분실·도난·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조사 내용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 나. 조사관련 기본 개념 및 설명

### 1) 조사대상 ‘거처’, ‘가구’, ‘가구주 및 가구원’

#### (1) 거처

- 거처는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를 지칭하며,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거주 단위를 말한다.
  - 거처는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로 구분한다.
  - 보다 친숙한 용어의 사용을 위하여 본 조사의 조사표에는 거처가 ‘집’으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다.
- 거처 유형



#### 주택

- 주택이란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첫째,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
  - 둘째, 부엌과 방이 각각 한 개 이상 있어야함
  - 셋째, 다른 가구의 주거부분을 통하지 않는 독립된 출입구를 갖추
  - 넷째,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사고 팔 수 있는 한 단위를 이루어야함

#### ○ 주택의 종류

##### ① 일반 단독주택

- 통상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 세든 가구가 있더라도 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 화장실이 별도로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그 집은 일반 단독주택에 해당

② 다가구 단독주택

-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
- 각 구획마다 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기가 불가능한 주택
- 전체층이 3층 이하이고, 전체층(각 층) 바닥 면적의 합(연면적)이 660㎡(200평) 이하인 경우

③ 영업겸용 단독주택

- 주거용 부분과 영업용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 중 주거 부분이 영업용 부분과 같거나 더 많은 건물의 주택(주거용 면적 ≥ 영업용 면적)



④ 아파트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5층 이상의 영구건물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공동주택
- ※ 4층 이하라도 아파트로 허가 받은 건물, 주상복합아파트는 아파트에 해당

⑤ 연립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
- 동당 건물 연면적이 660㎡(200평)을 초과하는 경우

⑥ 다세대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
- 동당 건물 연면적이 660㎡(200평) 이하인 경우
- ※ 주택별로 각각 분리하여 등기가 가능하며 매매 또는 소유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가구 단독주택과 다르고,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연립주택과는 구분됨



⑦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 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지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의 요건(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을 갖추고 있는 주택(주거용면적 < 영업용면적)
- ※ 상가, 학원, 공장 등 영업을 목적으로 지은 건물이지만 주거용 부분이 주택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에 해당

□ 주택의 구분

주택명	층수	연면적	특징	비고
일반 단독주택	3층 이하	330㎡ 이하	1인 소유 주거형태	-
다가구 단독주택	3층 이하	660㎡ 이하	1인 소유 주거형태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것이 불가능
영업겸용 단독주택	-	-	주거용면적 >= 영업용면적	-
아파트	5층 이상	-	-	-
연립주택	4층 이하	660㎡ 초과	2~4층의 빌라, 맨션 등 포함	규모가 다세대보다 조금 크고 아파트보다 작음
다세대 주택	4층 이하	660㎡ 이하	-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하는 것이 가능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	-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으로, 주거용면적 < 영업용면적	-

주택 이외의 거처

⑧ 오피스텔

-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된 건축물로 주거시설을 갖춘 사무실
- ※ 주거용도가 아닌 사무용도로만 쓰일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

⑨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 대실료를 내고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해당
- ※ 숙박업소의 투숙객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지만, 3개월 이상 투숙객은 조사대상에 포함됨(3개월 이상 거주한 주인은 조사대상에 해당)

⑩ 고시원

- 원래는 고시 등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시설이었지만 비용이 다른 주거시설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수험생 이외의 사람들도 많이 찾고 있는 주거시설의 한 형태
- 고시텔, 원룸텔, 미니텔, 미니원룸, 리빙텔 등으로 불림



⑪ 판잣집, 비닐하우스, 창고, 컨테이너, 공장·작업장·상점 안의 방(간이시설)

- 주거용도로 사용되지만 건축 재료나 구조 측면에서 주택의 요건(영구성)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
- 공장이나 상점 안의 잠만 자는 방을 포함

⑫ 기타

- 사람이 거주하지만 이상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건물
- 동굴 등 임시적 거주를 위한 구조물이나 위에서 예시되지 않은 주택 이외의 거처

## (2) 가구

### □ 가구의 정의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

※ 가구와 혼동하기 쉬운 개념

- ▶ 주민등록상 세대 : 주민등록상 세대는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만 포함하는 가구와 개념이 다르다.
- ▶ 가족 : 가족은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의 집단이지만, 가구는 혈연관계와 상관없이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이다.

### □ 가구 수 구분

○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1가구로 조사한다.

- 부모, 자녀, 친척 등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주인가구와 함께 생활하는 5인 이하의 하숙생, 가사 사용인(가정부, 운전사 등) 또는 종업원으로 구성된 경우

○ 취사, 취침 등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 가구로 분리하여 조사한다.

- 친척이 같은 집에서 살고 있으나, 생계를 달리 하는 경우
- 주인가구와 숙식을 달리하는 자취생인 경우

### □ 조사대상 제외가구

○ 집단가구

- 가족이 아닌 6인 이상의 집단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주인가구와 생계를 같이 하는 6인 이상의 하숙생, 가사 사용인 또는 종업원은 별도의 가구로 보며, 해당 가구는 집단가구이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 가구 유형 및 대상적격 여부

유 형	내 용	대상적격여부
일반가구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적 격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적 격
	가족이 아닌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적 격
	1인가구	적 격
집단가구	가족이 아닌 6인 이상 19인 이하의 가구	부 적 격
	가족이 아닌 20인 이상의 가구(집단지설 가구)	부 적 격
외국인 가구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적 격

## (3) 가구주 및 가구원

### □ 가구주

○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상의 가족관계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생계책임자를 말한다.

- 생계책임자는 단순히 가구원 중에서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 혈연 또는 친족관계가 없는 사람 2인 이상이 함께 사는 경우 그 중 한 사람(대표자 또는 연장자)을 가구주로 한다.

□ 가구원

○ 가구원이란 한 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구성원을 의미한다.

-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더라도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 ▶ 가족이라도 군복무, 취업, 교육 때문에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 주민등록은 함께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이 살고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된다.
  - ▶ 먼 친척, 친구, 가정부, 종업원 등 가족이 아닌 사람도 함께 살고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된다.
-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최근 **3개월** 이상 되었고, 조사당시에도 함께 살고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된다.

○ 가구원 포함 여부

구 분	내 용
가구원에 포함되는 사람	- 출장, 친지 방문, 여행, 행사, 입원, 환자 간호 등으로 잠시(3개월 미만) 집을 떠나 외지(국내, 국외)에 있는 사람
	- 선박, 항공기, 철도, 시외·관광버스 등의 탑승 승무원
	- 예비군 훈련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
	-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직업군인
	- 구직이나 무단가출 등으로 집을 떠나 정착 여부를 알 수 없는, 떠난 지 1개월이 되지 않는 가족
	- 숙식을 함께 하는 가사도우미 및 종업원
	- 외국인, 5인 이하의 하숙생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 군인 및 전투경찰, 의무경찰 등으로 입대한 가족
	- 학업 또는 직장 때문에 외지에서 살고 있는 가족
	- 보육원, 노인요양시설, 특수 병원, 부녀 보호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가족
	- 직장 등으로 외지에서 살고 있는 배우자(기러기 아빠, 주말 부부 등)

## 다. 조사항목별 작성 요령

### 1) 표지사항

※ 아래는 조사원이 기입하는 난입니다.

읍·면·동	조사구 번호	거처 번호	가구 번호
	□□□□ - □	□□□□	□□□□

조사원 성명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주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입니다.</li> <li>• 가구주가 아니어도 가구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가구원이 응답할 수 있습니다.</li> </ul>

○ 조사구 번호, 거처 번호, 가구 번호는 「가구관리종합표」에서 대상 가구를 찾아 기입한다.

○ 조사원의 성명을 기입한다.

○ 주의사항

- 설문문의 응답은 가구주가 아니어도 가구의 상황을 잘 아는 배우자나 성인 자녀 등이 할 수 있다. 단, 가구 현황의 몇 가지 설문 중 가구주에 대한 항목은 응답자와 상관없이 가구주를 기준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 혈연 또는 친족관계가 없는 사람 2인 이상이 함께 사는 경우 그 중 한 사람(대표자 또는 연장자)을 가구주로 한다.

### 2) 부문별 사항

※ 객관식 문항의 경우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는 1개의 번호에만 표시해 주십시오.

#### I

### 가구의 주거실태

#### 1.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포함) | ② 아파트                    |
| ③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④ 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등) 내 주택 |
| ⑤ 오피스텔                 | ⑥ 숙박업소의 객실, 판잣집, 비닐하우스   |
| ⑦ 기타 ( )               |                          |

#### 1. 현재 주택유형

- ▷ 현재 살고 있는 거처의 유형을 조사한다.
- ▷ ① ~ ④ 는 주택의 요건을 갖춘 곳으로 (준)영구적 건축물이고 가구의 독립된 출입구가 있으며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이 있는 곳이다. ⑤ ~ ⑦ 은 이러한 주택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공간이다.
- ▷ p.18 ~ 20의 거처 유형을 참고한다(영업겸용 단독주택은 일반 단독주택으로 조사한다).
- ▷ ①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포함)의 다중주택은 고시원과 같이 한 건물에 여러 개의 방과 한 개 이상의 부엌이 있는 경우로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 2. 지상, 지하, 옥상 중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① 지상

② 지하(반지하)

③ 옥상(옥탑)

### 2. 거주층

▷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위치(거주층)에 대해 조사한다.

▷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지상과 (반)지하 등 복수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취사 및 취침 공간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① 지상 : 1층 이상에 거주하는 경우

② 지하(반지하)

- 지하 : 건물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높이가 해당 층의 1/2 이상인 경우

- 반지하 : 건물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높이가 해당 층의 1/2 미만인 경우

③ 옥상(옥탑) : 건물 옥상에 설치된 주거 공간

## 3.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실제 사용하는 주거용 면적은 몇 제곱미터(㎡)입니까?

- 주거에 이용하는 부분만 기입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 면적이 아닌 전용 면적 기준으로 기입합니다.
- 주택의 일부분을 세를 준 경우 세 준 면적은 제외하고, 차고·창고·허간 등은 제외합니다.

㎡

### 3. 주거용 연면적

▷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을  부분에 정수로 기입한다.

▷ 연면적이란 건물 각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을 의미한다.

▷ 가구가 사용하는 화장실, 욕실 등이 건물외부에 있는 경우 그 면적을 포함한다.

- 주택 중 일부를 세준 경우 세준 주거면적과 차고·창고·허간 등의 면적은 제외한다.

▷ 응답자가 면적을 잘 모를 경우에는 부동산정보통합포털([www.onnara.go.kr](http://www.onnara.go.kr))을 참조하여 기입이 가능하다.

▷ 기존에 사용되던 단위인 '1평'은 3.3㎡에 해당되므로, 평으로 응답한 경우 제곱미터 (㎡)로 환산하여 기입한다.

## 4. 사용하고 있는 방과 거실은 몇 개인지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1) 잠을 자는 방

개

2) 기타 용도의 방(서재, 옷방 등)

개

3) 거실

개

### 4. 사용 방 수 및 거실 수

▷  부분에 숫자로 기입한다.

▷ 방이란 사면이 벽 또는 문으로 막혀 있고 높이는 2m, 넓이는 4㎡ 이상인 것을 말한다. 잠을 자는 방, 서재, 놀이방 등 실제로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통로, 베란다, 화장실, 창고 등과 같이 방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방은 제외한다.

▷ 잠을 자는 방은 현재 기준으로 실제 잠을 잘 때 사용하는 방을 의미하며, 가구원수[문항 33]를 초과할 수 없다.

▷ 다락은 방의 요건을 갖추고 사람이 실제 사용하는 경우에만 방으로 포함한다.

▷ 원룸은 잠을 자는 방 1개, 거실은 없는 것으로 기입한다.

▷ 고시원이나 숙박업소의 객실인 경우 사용 면적이 4㎡ 미만이라도 방 1개로 기입한다.







## II

## 지역의 주거환경

### 12. 당진시에 살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예전부터 살아와서      ② 걱정한 주거비      ③ 학교·직장과 근접      ④ 편리한 교통  
 ⑤ 양호한 교육환경      ⑥ 친척이나 친구 거주      ⑦ 쾌적한 동네환경      ⑧ 기타 (                      )

#### 12. 거주 이유

- ▷ 당진시에 거주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 조사한다.
- ▷ ‘결혼’하여 살게됐다고 응답하는 경우 기타로 처리하지 않고, 제시되어 있는 항목을 기준으로 이유를 구체적으로 조사한다. 예를들어, 저렴한 집을 구해서인 경우는 ‘저렴한 주거비’로, 배우자의 직장을 따라 살게 되었다면 ‘직장’ 등으로 기입한다.
- ▷ 가구주와 가구원이 당진시에 거주하게 된 이유가 다를 경우 가구주를 기준으로 조사한다.

### 13. 당진시에 살게 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 가구원 중 가장 오래 살고 있는 가구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2년 미만      ③ 2년 이상~3년 미만      ④ 3년 이상~5년 미만  
 ⑤ 5년 이상~10년 미만      ⑥ 10년 이상~15년 미만      ⑦ 15년 이상~20년 미만      ⑧ 20년 이상

#### 13. 거주 기간

- ▷ 당진시에 가장 오래 살고 있는 가구원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을 조사한다.
- ▷ 과거에 당진시에 살다 다른 곳으로 이사 갔다가 다시 당진시로 이사 온 경우는 당진시 거주 기간을 합산하여 조사한다.

### 14. 현재 살고 있는 동네의 주거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시장, 상점 등 유통시설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병원 등 의료시설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문화시설 및 공원, 놀이터를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주차시설이 양호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소방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인도 등 보행환경이 양호하다	①	②	③	④	⑤
8)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①	②	③	④	⑤
9) 치안이 양호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청소 및 쓰레기처리 상태가 양호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이웃과의 관계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 14. 현재 주거환경 평가

- ▷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주거환경에 대해 각 항목별로 ‘매우 그렇다’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까지 5단계로 구분하여 응답자 본인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조사한다.
- ▷ 가구 소유 차량이 없는 가구에 대해 ‘5) 주차시설이 양호하다’ 항목 조사 시에는, 동네의 전반적인 주차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
- ▷ ‘6) 소방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다’ 항목에서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4m 이상 도로가 집 주변으로 확보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며 확보되지 않은 경우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한다.
- ▷ 학령 자녀가 없는 가구에 대해 ‘8)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항목 조사 시에는, 이웃이나 주변사람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다.

**15. 현재 살고 있는 동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순서대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 1순위만 기입하셔도 됩니다.

1순위	
-----	--

2순위	
-----	--

- |                        |                   |
|------------------------|-------------------|
| ① 노후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      | ② 공용주차장 설치        |
| ③ 소방도로·보행로 확보          | ④ 방범시설 설치 및 치안 강화 |
| ⑤ 쓰레기처리 개선 및 깨끗한 환경 유지 | ⑥ 상하수도·배수로 정비     |
| ⑦ 마을경관 가꾸기             | ⑧ 기타 ( )          |

**15.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

- ▷ 당진시 전체에 대한 선결과제가 아닌 응답자에게 가장 필요한 선결과제를 기준으로 조사한다.
- 민간에서 추진하기 보다는 시나 공공기관에서 추진할 과제를 중심으로 조사한다.

**16.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우선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공공시설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순서대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 1순위만 기입하셔도 됩니다.

1순위	
-----	--

2순위	
-----	--

- |                   |                  |       |              |
|-------------------|------------------|-------|--------------|
| ① 가로등, CCTV       | ② 사회복지관          | ③ 경로당 | ④ 보건 및 의료 시설 |
| ⑤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센터 | ⑥ 공원, 놀이터, 야외 쉼터 | ⑦ 도서관 | ⑧ 체육관, 문화관   |
| ⑨ 다문화·이주민 지원센터    | ⑩ 기타 ( )         |       |              |

**16. 필요 공공시설**

- ▷ 당진시 전체에 대해 필요한 시설이 아닌 응답자가 거주하는 동네에서 가장 필요한 공공시설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 이미 있는 시설이지만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선택할 수 있다.

### III

## 가구의 주거비 부담

### 17.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직전에 살던 집은 자기 집입니까? 셋집입니까?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에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현재

직전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사글세, 일세

④ 공공임대

⑤ 무상

#### 17. 현 거처와 직전 주택 점유형태

▷ 현재 살고 있는 거처 및 직전 거주 거처의 점유형태에 대해 조사한다.

▷ 직전 거처가 없는 경우, 직전 부분은 공란으로 남겨둔다.

▷ 가구주와 가구원의 직전 점유형태가 다를 경우 가구주를 기준으로 조사한다.

▷ 땅(토지)은 국가, 지자체 등의 소유이고, 주택은 자신 소유인 경우 '① 자가'에 기입한다.

① 자가 : 소유권이전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가구주나 가구원 소유의 집에서 거주하는 형태

② 전세 : 전세금을 내고 주택을 임차한 경우로, 반전세는 월세로 조사

③ 월세, 사글세, 일세

- 월세 : 일정액의 보증금이 있든 없든, 매월 일정 액수의 집세를 내는 경우

- 사글세 : 일정한 기간의 월세를 한꺼번에 내고 매월 일정액의 집세를 감해 가는 경우

- 일세 : 집이나 방을 빌려 쓰고, 매일 집세를 내는 경우

④ 공공임대

-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에서 공급하는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이 있음

- 매입·전세임대주택은 기존 단독·다가구주택을 형태로 제공되며, 나머지 공공임대주택은 단지형 아파트로 주로 공급됨

- 공공임대는 공공에 주택소유권이 있으며 거주 가구는 월세 형태로 거주함. 따라서 크게는 월세에 포함됨

⑤ 무상

- 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

- 가구주나 가구원이 소유한 집이 아니고, 다른 가구를 이루고 있는 부모, 형제, 친지 등이 소유한 주택에서 임대료나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

**18.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거비 부담 관련 문항입니다. <현재 주택가격>은 자가가구만, <임차료>는 임차가구만 응답해 주십시오. <월평균 공과금과 관리비>는 모든 가구가 응답해 주십시오.**

- 현재 주택가격은 매매 당시의 가격이 아닌 현재의 시세를 의미합니다.
- 사글세, 일세의 경우는 월세로 환산하여 기입합니다.
- 월평균은 지난 1년(2020년 1월 1일~12월 31일) 동안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 공과금에는 수도요금·전기요금·난방비·취사용 연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1) 현재 주택가격		<input type="text"/>	억	<input type="text"/>	만원	
임 차 료	2) 전세 보증금		<input type="text"/>	억	<input type="text"/>	만원
	3) 월세	보증금	<input type="text"/>	억	<input type="text"/>	만원
		매달 월세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4) 월평균 공과금과 관리비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만원	

**18. 주거비 금액**

- ▷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해 조사한다.
- ▷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  부분에 숫자로 기입한다.
  - 현재 주택 가격은 자가 거주 가구로, [문항 17]의 현재 점유형태에 '① 자가'로 응답한 경우만 응답한다.
  - [문항 17]의 현재 점유형태에 '④ 공공임대'로 응답한 경우, 3) 월세로 기입한다.
  - [문항 17]의 현재 점유형태에 '⑤ 무상'으로 응답한 경우, 월 평균 공과금과 관리비만 응답한다.
- ▷ 자가는 매입 당시의 가격이 아닌 현재 시세를 기입한다.
- ▷ 전세는 입주 당시의 전세 보증금을 기입한다. 재계약하여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최종 계약서상의 전세 보증금을 기입한다.
- ▷ 보증금 있는 월세는 입주 당시의 보증금과 한 달 분 월세를 기입한다. 재계약하여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는 최종 계약서상의 보증금과 한 달 분 월세를 기입한다.
- ▷ 보증금 없는 월세는 한 달 분 월세 가격만 기입하고, 사글세는 한 번에 낸 금액을 개월 수로 나눠 '매달 월세' 항목에 월 평균 금액을 기입한다. 일세의 경우는 한 달을 30일로 계산하여 '매달 월세' 항목에 기입한다.
- ▷ 월 평균 공과금과 관리비는 합산하여 기입한다.
  - 임차의 경우 월 임대료를 포함하지 않는다.
  - 공과금은 여름과 겨울을 포함한 지난 1년을 기준으로 월 평균 금액으로 계산하여 기입한다.
  - 관리비에는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보일러 교체와 같은 일상적이지 않은 주택수선·유지비는 제외한다.







**26. 다음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요 주거복지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알고 있는지와 필요인지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에 대해 공공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에너지바우처는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 등을 가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여름철과 겨울철에 최소한의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알고 있습니까?		필요합니까?	
	알고 있다	모른다	그렇다	아니다
1) 공공임대주택(영구·국민·매입 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①	②	①	②
2) 전세임대주택	①	②	①	②
3) 주택구입자금 대출	①	②	①	②
4) 전세자금 대출	①	②	①	②
5) 월세 보조(임차가구 주거급여 등)	①	②	①	②
6) 집수리 지원(주거급여 중 집수리지원, 농어촌 집수리지원 등)	①	②	①	②
7) 에너지 바우처	①	②	①	②
8) 주거관련 상담(주거복지센터 등)	①	②	①	②

**26. 주거복지 프로그램 인지 여부와 필요 여부**

▷ 각각의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인지 여부와 필요 여부에 대해 조사한다.

▷ 각각의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여 응답자에게 제도나 사업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 소개를 통하여 지원의 수요를 확인하여 필요 여부를 응답하도록 한다.

1) 공공임대주택

- 공공이 직접 건설하거나 기존 주택을 매입·임대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
- 영구임대주택, 5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2) 전세임대주택

- 지원 대상 가구가 원하는 지역에서 전세주택을 구하면 공공에서 일정범위의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의 한 종류임

3) 주택구입자금 대출

- 무주택세대주에게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여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

4) 전세자금 대출

- 저소득가구에 전세 자금이 필요할 때,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

5) 월세 보조(임차가구 주거급여)

- 주거급여(임차급여): 일반 민간 임대주택 거주 저소득 전월세가구에게 월 임대료를 보조

6) 집수리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가구(자가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무료로 주택 개량을 지원하는 제도
- 농어촌 집수리지원, 장애인 집수리지원 등

7) 에너지 바우처

- 에너지 바우처 : 저소득층에게 여름철과 겨울철에 최소한의 냉·난방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을 가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원하는 형태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바우처를 지급함

8) 주거관련 상담(주거복지센터 등)

- 동주민센터나 주거복지센터 등에서 1) ~ 7) 에 해당하는 주거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문의와 상담 경험을 조사한다.
- 아직 상담 경험이 없는 경우 1) ~ 7) 에 해당하는 주거지원 서비스에 대한 지원 상담이 필요한지 조사한다.

**27. 필요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프로그램이나 신청방법을 몰라서
- ② 자격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서
- ③ 신청해도 못 받을 것 같아서(대기자 많아서)
- ④ 기타 ( )
- ⑤ 필요 없음

27. 필요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 >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지원받지 못 하는 이유에 대해 조사한다.  
 > [문항 26]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⑤ 필요 없음'을 선택할 수 없다.

**28.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의사가 있습니까?**

•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가구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① 있다 ↘

**28-1. 입주하려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 ② 자주 이사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 ③ 현재 집보다 주거환경이 좋을 것 같아서
- ④ 기타 ( )

② 없다 ↘

**28-2. 입주 의사가 없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입주 자격이 안 될 것 같아서
- ②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기 싫어서
- ③ 공공임대주택이 대부분 좁아서
- ④ 월 임차료와 관리비가 부담되어서
- ⑤ 임차보증금 등 추가 비용 마련이 어려워서
- ⑥ 이미지가 안 좋아서
- ⑦ 기타 ( )

**28.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

> 향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의사가 있는지 조사한다.  
 - [문항 17]에서 '④ 공공임대'로 응답한 경우에는 조사하지 않음

**28-1. 공공임대주택 선호 이유**

> [문항 28]에서 '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조사한다.

**28-2. 공공임대주택 기피 이유**

> [문항 28]에서 '② 없다'고 응답한 경우에만 조사한다.  
 - '① 입주 자격이 안 될 것 같아서'는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득·자산 등이 많아 입주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의미함  
 - '②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기 싫어서'는 이미 이웃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아이들이 학교를 다녀 전학이 어렵거나, 지역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등의 이유로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기 싫은 경우임  
 - '③ 공공임대주택이 대부분 좁아서'는 면적이 좁거나, 방수가 적어 가구원수에 비해 부족한 경우 등임  
 - '④ 월 임차료와 관리비가 부담되어서', '⑤ 임차보증금 등 추가 비용 마련이 어려워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대부분 보증금과 월세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부담을 나누어 확인함. 보증금은 마련이 되나 매월 월세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매월 월세는 부담가능하나 보증금 정도의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 '⑥ 이미지가 안 좋아서'는 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차별적 이미지가 있는지 확인함



# V

## 가구 현황

### 32. 귀택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① 가족(친척포함)으로 이루어진 가구 →
- ② 가족(친척포함)과 남이 함께 사는 가구
- ③ 1인가구
- ④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 32-1.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만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조손가족
- ② 한부모가족

### 32. 가구형태

- ▷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를 의미한다.
- ▷ 주민등록상의 '세대'가 아닌, 현재 실제로 함께 살고 있는 가구원을 기준으로 조사한다.
- ▷ 가족에는 이모, 고모, 삼촌 등 친척이 포함된다.
- ▷ 친척이 같은 집에 살고 있더라도 취사, 취침 등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 가구로 분리하여 조사한다.
- ▷ 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는 가구원수와 상관없이 조사대상이지만,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 가구는 집단가구로 조사대상이 아니다.
- ▷ [문항 32]에서 '① 가족(친척 포함)으로 이루어진 가구' 로 응답한 경우에만 조사한다.
- ▷ 만 18세 미만 자녀와 함께 사는 한부모가족, 조손가구만 ①. ②에 해당한다. 자녀가 만 18세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 32-1. 가구유형 (가족)

- 한부모가족과 조부모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한부모가족으로 조사함

### 33.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의 만 나이를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 2021년 8월 6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만 나이를 기입합니다.
- 가구주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와 상관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①번 가구원(가구주)	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세	②번 가구원	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세
③번 가구원	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세	④번 가구원	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세
⑤번 가구원	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세	⑥번 가구원	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세
⑦번 가구원	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세	⑧번 가구원	만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세

### 33. 가구원수와 연령

- ▷   부분에 숫자로 기입한다.
- ▷ 2021년 8월 6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의 나이와 상관없이 실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하는 만 나이를 기입한다. (만나이는 기준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으면 세는 나이에서 -1,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세는 나이에서 -2를 한다.)
- ▷ 가족이 함께 사는 9인 이상 가구의 경우 추가 조사표에 ⑨번 이상 가구원의 만 나이를 기입한다.



### 37. 가구의 혼인 상태는 무엇입니까?

① 미혼

② 배우자 있음

③ 사별

④ 이혼

#### 37. 가구주 혼인 상태

- ▷ 혼인신고 등 법률상의 혼인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혼인 상태를 조사한다.
  - ▷ 혼인 상태는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연령과 관련이 많으므로 반드시 연령과 비교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① 미혼
    - 한 번도 결혼한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해당된다.
  - ② 배우자 있음
    - 혼인하여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동거)도 포함한다.
    - 이혼 후 재혼한 경우 '② 배우자 있음'에 기입한다.
  - ③ 사별
    - 혼인은 하였으나 배우자가 사망하여 현재 혼자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광복 전 또는 한국전쟁 당시 배우자가 납치 또는 실종된 사람은 사별로 간주한다.
    - 재혼하였으나 배우자가 사망하여 현재 혼자 살고 있는 경우 '③ 사별'에 기입한다.
  - ④ 이혼
    - 혼인 후 배우자와 헤어져서 현재 혼자 살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재결합이 예상되지 않는 별거도 포함한다.

**38. 가구주는 지난 1주일(2021년 7월 30일 ~ 8월 5일) 동안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습니다니까?**

- 부업, 아르바이트 등 수입이 있는 일을 1시간 이상 한 경우, 가족의 수입이 있는 일을 18시간 이상 도와준 경우 일한 것에 포함됩니다.

- ① 일하였다      ↘      ② 일하지 않았다

**38-1. 가구주는 어떠한 지위로 일하였습니까?**

- ① 상용근로자      ② 임시·일용근로자(아르바이트, 부업, 자활·공공근로 포함)  
 ③ 자영업자      ④ 무급가족종사자

**38. 가구주 경제활동 여부**

- ▷ 가구주가 수입을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경우 '① 일하였다'에 기입한다.
- ▷ 동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 등에서 무보수로 조사대상 주간에 18시간(정상근로시간의 1/3 이상) 이상 일한 사람은 '① 일하였다'로 조사하지만, 가족이 아닌 가구원의 일을 돕거나, 가구를 달리하는 가족의 일을 돕는 것은 '② 일하지 않았다'로 조사한다.
- ▷ 일시 휴직은 직장 또는 자기가 경영하는 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나 조사대상 기간에 자신이나 가족의 병, 사고, 휴가(연가), 교육, 노사분규, 조업중단 등으로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 유급 일시 휴직자는 '① 일하였다'로 조사한다.
- 무급 일시 휴직자는 복귀가 확실하고, 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만 '① 일하였다'로 조사한다.

**38-1. 가구주 근무 형태**

- ▷ [문항 38]에서 '① 일하였다'로 응답한 경우에만 조사한다.
- 여러 일을 한 경우, 주된 일을 기준으로 종사상의 지위를 조사한다.
- ① 상용근로자
  -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② 임시·일용근로자
  - 자신의 근로에 대해 월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
  - 임시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
  - 일용근로자는 일일단위로 고용되어 근로대가를 일급으로 받는 경우
  - 시간제 아르바이트나 가내에서 하는 부업의 경우에도 포함한다.
- ③ 자영업자
  - 사업규모 및 고용원 유무에 상관없이 개인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
- ④ 무급가족종사자
  - 자기가족(동일 가구 내)의 일원이 경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정한 보수 없이 적어도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
  - 동일 가구 내 가족에게서 일정한 봉급을 받는 경우는 임금근로자로 분류

**39. 지난 1년(2020년 1월 1일~12월 31일) 동안의 월 평균 가구 총소득은 얼마입니까? 세금을 제외한 실 수령액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가구 총소득은 가구주와 전 가구원의 근로 및 사업 소득, 금융 소득, 연금 및 이전 소득, 부동산 소득 등의 합계입니다.

--	--	--	--	--

 만원

**39. 월 평균 가구 총소득**

- ▷ 

--	--	--	--

 부분에 숫자로 기입한다.
- ▷ 2020년도(2020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를 기준으로 근로 및 사업 소득, 금융 소득, 부동산 소득, 이전 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숫자로 기입한다.
- ▷ 세금 등을 제하고 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한다.
- ▷ 월 평균 가구 총소득은 가구주와 전 가구원의 근로 및 사업소득, 금융소득 등의 합계를 의미한다.
- ▷ 수급가구의 경우 월평균 수급 총 급여액을 포함한다.
- ▷ 모든 가구원의 아르바이트나 부업 등의 소득도 포함한다.
- ▷ 같이 살고 있지 않는 부모나 자녀, 친인척으로부터 받는 용돈도 소득에 포함한다.



**41.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이외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소득 지원
- ②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집수리 등 주거 지원
- ③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일자리 지원
- ④ 의료급여, 활동보조, 간병 등 의료 지원
- ⑤ 아동수당, 보육, 교육급여 등 교육 지원
- ⑥ 식료품, 연탄, 식사 등 현물 지원
- ⑦ 기타 ( )
- ⑧ 없음

**41. 사회복지서비스 필요 유형** | ▷ 현재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외하고, 가장 지원이 필요한 서비스를 조사한다.

**4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가구입니까?**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한 가지 이상의 수급가구를 의미합니다.

① 그렇다 ↘

**42-1. 받고 있는 급여를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① 생계급여
- ② 의료급여
- ③ 주거급여
- ④ 교육급여
- ⑤ 기타 ( )

② 아니다 ↘

**42-2. 수급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 ② 없다

**42-2-1. 선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해서
- ②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 ③ 이유를 모르겠음
- ④ 기타 ( )

**42. 수급가구 여부** | ▷ 수급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급자로 지정되어 ① 생계급여, ② 의료급여, ③ 주거급여, ④ 교육급여 등의 제공받는 가구를 의미한다.  
- ⑤ 기타는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수급가구인 경우에 해당됨  
▷ 다음을 참조 확인한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827,831원	3,088,079원	3,983,950원	4,876,290원
교육급여 (중위 50%)	913,916원	1,544,040원	1,991,975원	2,438,145원
주거급여 (중위 45%)	822,524원	1,389,636원	1,792,778원	2,194,331원
의료급여 (중위 40%)	731,132원	1,235,232원	1,593,580원	1,950,516원
생계급여 (중위 30%)	548,349원	926,424원	1,195,185원	1,462,887원

**42-1. 수급 항목** | ▷ 수급 받고 있는 모든 항목을 기입한다.

**42-2. 수급 신청 여부** | ▷ [문항 42]에서 '②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조사한다.

※ 조사관리자는 조사표 회수 및 내용검토 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검토한 후, 미비한 사항은 전화 또는 재방문을 통해 응답자에게 직접 조사하여 보완한다.

#### □ 내용검토란?

- 조사표의 각 항목을 조사할 때와 조사항목의 전체 기입을 마친 후에 각 항목에 대하여 지침서대로 맞게 기입되었는지를 점검하는 작업으로, 관련 항목 사이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응답이 있는지 등을 점검하는 것이다.

### 1 공통사항

- 누락된 항목이 있는지 확인한다.
- 복수응답이 아닌 경우 1가지에만 응답했는지 확인한다.
- 기타에 표시된 경우 사유가 기입되었는지, 또한 기입된 내용이 다른 응답항목에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 응답 내용이 변경된 경우 확실하게 수정하여 자료 입력 시 착오가 없도록 주의한다.

### 2 표지사항

- 조사표 표지에 기입된 '읍면동, 조사구 번호, 거처번호, 가구번호'가 「가구관리종합표」상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조사원 성명이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

### 3 부문별사항

#### I 가구의 주거실태

##### (문항 1) 현재 거처의 유형

- 거처 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에 유의하여 확인한다.

##### (문항 4) 사용 방 수 및 거실 수

- 잠을 자는 방 수가 가구원수(문항 33)를 초과하는지 확인한다.

##### (문항 5) 주거시설 유무 및 종류와 사용형태

- 항목별로 모두 기입했는지 확인한다.
- 종류에서 '없음'이라고 응답한 경우에는 사용형태에 무응답 처리를 했는지 확인한다.

(문항 8) 현재 집의 상태 평가

- 항목별로 모두 기입했는지 확인한다.
- 집의 상태가 좋을수록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하였는지 확인한다.

**II** 지역의 주거환경

(문항 14) 현재 주거환경 평가

- 항목별로 모두 응답했는지 확인한다.

**III** 가구의 주거비 부담

(문항 17) 현재 및 직전 거주 거처의 점유 형태

- 현재 살고 있는 거처와 직전에 거주했던 거처의 점유 형태가 모두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
- 거처종류(문항 1)와 비교하여 확인한다. '④ 공공임대'로 응답한 경우 (문항 1)에서 ①, ②, ③ 번에 응답했는지 확인한다.

(문항 18) 주거비

- 점유형태(문항 17)의 응답과 비교하여 응답 항목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 특히, (문항 17)에서 '④ 공공임대'로 응답한 경우 3) 월세로 응답했는지 확인한다.

(문항 19) 타지주택 보유 여부

- 현재 살고 있는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② 미보유'로 응답했는지 확인한다.

(문항 21~문항 23) 임차가구의 주거불안, 임차료 상승으로 인한 이사 경험, 임차보증금 상승에 대한 대처 계획

- 점유형태(문항 17)에서 '① 자가', '④ 공공임대', '⑤ 무상'으로 응답한 경우에 무응답 처리를 했는지 확인한다.

**IV** 주거복지정책

(문항 26) 주거복지 프로그램 인지 여부와 필요 여부

- 항목별로 모두 응답했는지 확인한다.

(문항 27) 필요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

- (문항 26)에서 필요하다고 응답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이 있는지 확인한다.

(문항 28)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사

- (문항 17)에서 '④ 공공임대'로 응답한 경우에 (문항 28), (문항 28-1), (문항 28-2)에 무응답 처리를 했는지 확인한다.

(문항 31-1) '임대차3법'에 대한 찬성 이유

- (문항 31)에서 '① 매우 찬성한다'와 '② 찬성한다'로 응답한 경우에 (문항 31-1)에 응답했는지 확인한다.

(문항 31-2) '임대차3법'에 대한 반대 이유

- (문항 31)에서 '④ 반대한다'와 '⑤ 매우 반대한다'로 응답한 경우에 (문항 31-1)에 응답했는지 확인한다.

## V 가구 현황

(문항 32-1) 가구유형

- (문항 32)에서 '① 가족(친척포함)으로 이루어진 가구'라고 응답한 경우에 (문항 32-1)에 응답했는지 확인한다.

(문항 33) 가구원수 및 가구원의 만 나이

- 가구주와 가구원 만 나이가 모두 기입되었는지 확인한다.
- 가구형태(문항 32)에서 '③ 1인가구'라고 응답한 경우 가구원수도 '1명'으로 동일한지 확인한다.
- 가구유형(문항 32-1)에서 '① 조손가구'로 응답한 경우는 만 65세 이상 가구원 현황을 확인한다. (문항 32-1)에 해당하는 가구 모두는 만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지 확인한다.

(문항 34) 가구원 특성

- (문항 11)의 거동 불편 가구원 유무를 참고하여 장애인 가구원 유무를 확인한다.

(문항 35) 가구주 성별

- 가구주의 배우자가 응답한 경우 가구주 기준으로 응답했는지 확인한다. 이하의 가구주 관련 문항도 동일하게 확인한다.

(문항 36) 가구주 교육 정도

- 교육 정도와 연령의 관계가 합리적인지 확인한다.

(문항 37) 가구주 혼인 상태

- 혼인 상태와 연령의 관계가 합리적인지 확인한다.

(문항 39) 월 평균 가구 총소득

- 가구주 경제활동 여부(문항 38)와 가구주 근무형태(문항 38-1)를 참고하여 가구소득이 과소, 과대평가되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문항 4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가구 여부

- (문항 39)의 월평균 가구 총소득을 참고하여 확인한다.

(문항 42-1) 수급 받고 있는 급여

-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다른 급여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른 급여에 대해서 확인한다. 교육급여는 학령기 아동이 있는지 확인한다.

## 1. 주요 사례별 처리 방법

## 〈경제활동상태 사례와 판단〉

사례	판단
남편(가구주)은 공무원이고, 아내(배우자)는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의 농장에서 무급으로 일을 도운 경우 「① 일하였다」에 해당?	동일가구 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농장에서 무보수로 조사대상 주간에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은 「① 일하였다」로 조사하지만, 가족이 아닌 가구원의 일을 돕거나, 가구를 달리하는 가족 일을 돕는 것은 해당되지 않음
휴직자의 경우는?	휴직은 조사대상주간에 자신이나 가족의 병, 사고, 휴가(연가), 교육, 노사분규, 원료부족 및 일기불순에 따른 조업중단 등으로 직장 또는 자기가 경영하는 사업장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말함 단, 일시휴직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직장에 복귀 가능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른 사람의 노동쟁의 때문에 직장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됨 무급으로 휴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는 포함되지 않음
자녀보조로 생계를 유지하는 할머니가 출가한 딸의 분식점에 가끔 가서 집안일을 돌봐주고 생계보조를 받는 경우 할머니의 활동 상태는?	가사를 돌봐 주고 있는 경우 식사 등이 제공되고 생계비를 보조받고 있다면, 일을 돌봐 준 대가로 봐서 「① 일하였다」로 조사
고등학교 학생이 단과학원에서 칠판청소를 해주고 본인은 영어, 수학을 무료로 수강하는 경우 활동 상태는?	취업자로 조사
할머니가 자기 손자녀를 돌봐주고 보수를 받는 경우는?	손자를 돌봐 주는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형태에 해당되므로 「① 일하였다」로 조사
초·중·고등학교에서 급식담당(주방일)하는 주부가 겨울방학 또는 여름방학 전까지 일하고, 방학 중에는 전혀 일을 하지 않은 경우 방학기간 중 활동 상태는?	조사대상기간 중 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정한 직장이 있고, 앞으로도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이 확실하기 때문에 「① 일하였다」로 조사
건축업자가 건물 완성 후 매매가 되지 않고 있어 현장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매매상담 전화만 하고 있는 경우 활동 상태는?	「① 일하였다」로 조사
농업종사자가 농한기에 자기 집을 짓는 경우 경제활동 상태는?	농업종사자가 자기 집을 짓는 경우는 「② 일하지 않았다」로 조사 ※ 목수가 자기 집을 짓는 경우는 비록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고유기능인 본업을 살려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① 일하였다」로 조사하며, 종사상 지위는 「③ 자영업자」로 조사

사례	판단
정기적으로 월초나 월말에만 일을 하는 사람으로 조사대상주간에는 항상 집에서 쉬는 경우 활동 상태는?	정기적으로 조사대상주간이외에 일을 하는 경우는 취업의 계속성이 있는 것이므로, 「① 일하였다」로 조사
비경제활동인구가 선거에 출마한 경우 활동 상태는?	선거에 출마한 것은 수입 있는 일에 종사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② 일하지 않았다」로 조사
자기 집 앞 텃밭에서 본인 및 가족의 소비 목적 및 소일거리로 곡식 및 채소 등을 가꾸는 사람의 활동 상태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일한 것은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② 일하지 않았다」로 조사
건설장비임대업자가 조사대상주간에 일거리가 없어 일을 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찾아 구직하였을 경우의 활동 상태는?	자기 장비를 가지고 취업활동을 하다가 계절적인 요인으로 일거리가 없어 일을 하지 못하고 구직 활동을 한 경우는 「② 일하지 않았다」로 조사 ※ 계절적 취업자의 경우 현재 일시적 병, 휴가 기계 고장 및 분실 등으로 일을 못했을 때만 「① 일하였다」로 조사
다른 가구에 사는 부모가 분식점을 하고 있는데 딸이 매일 분식점 일을 도와주고 있는 경우 활동 상태는?	혈연가족이라 할지라도 따로 살고 있으면서 일을 도와줄 때는 밥값, 용돈 등에 해당하는 돈을 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① 일하였다」로 조사하나 전혀 아무 것도 받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② 일하지 않았다」로 조사 단순히 부모님을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하여 무급 가족종사자로 조사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종사상 지위가 무급가족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구 내 함께 사는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일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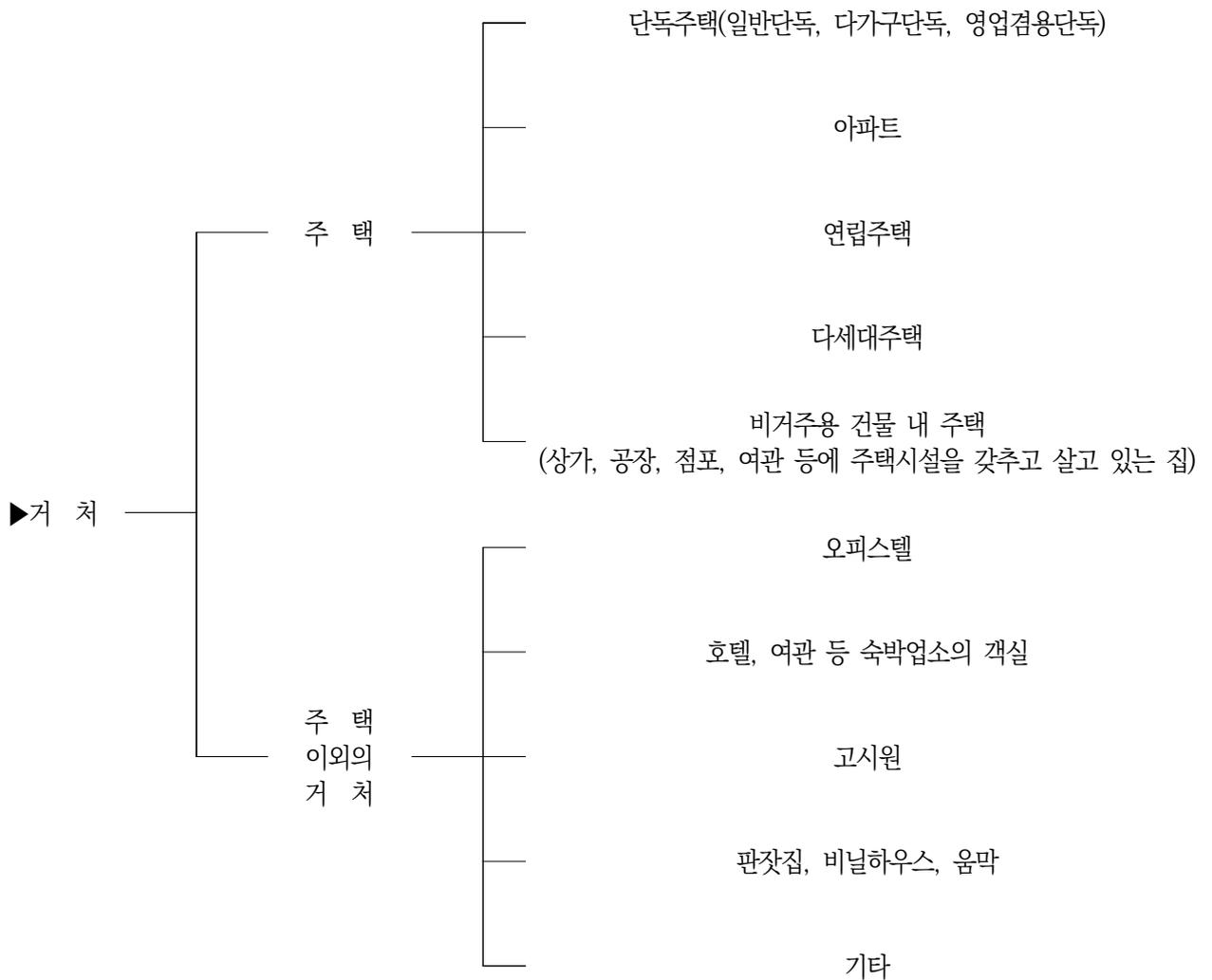
〈종사상의 지위 사례와 판단〉

사례	판단
가내작업의 종사상의 지위 분류 기준은?	자기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작업의 대가를 이윤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재료를 가내작업자 본인이 구입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③ 자영업자」로 조사 자기 장비 없이 하는 경우로서 재료를 본인이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③ 자영업자」로 조사하고, 재료를 타사업체에서 공급받아 간단한 마무리작업 등을 해주고 일한 양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경우에는 「① 상용근로자」(1년 이상 근로 시) 또는 「② 임시·일용근로자」(1년 미만 근로 시)로 조사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학생과외 지도를 하는 경우 종사상 지위는?	입주한 경우에만 「① 상용근로자」(1년 이상 근로 시) 또는 「② 임시·일용근로자」(1년 미만 근로 시)로, 나머지는 「③ 자영업자」로 조사
개인택시기사가 처와 같이 일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 처의 종사상 지위는?	처의 수입으로 구분하는 것 없이 남편의 수입으로 일괄 처리되면 처의 종사상 지위는 「④ 무급 가족종사자」로 조사
평상시에는 집에서 가사를 돌보나 여행사에서 필요 시 부르면 통역을 해주는 사람의 종사상 지위는?	본인의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는 「③ 자영업자」로 보며, 집에서 연락을 기다리는 경우는 「① 상용근로자」(1년 이상 근로 시) 또는 「② 임시·일용근로자」(1년 미만 근로 시)로 분류
보험모집인, 우유·화장품 등 외판원의 종사상 지위 구분?	보험모집인의 경우, 일정기간의 교육이수 후 회사 소속의 모집인으로서 보험협회에 정식 가입 되면 실적에 따른 실적급이 기본급과 더불어 지급되는 경우는 회사에 소속되어야 활동이 가능하므로 「① 상용근로자」(1년 이상 근로 시) 또는 「② 임시·일용근로자」(1년 미만 근로 시)로 분류하며, 보험대리점이나 영업소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부여 받아 독립된 점포를 소유한 경우는 「③ 자영업자」로 분류 우유·화장품 등 외판원의 경우, 자기 자본을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③ 자영업자」로 분류하고, 물건을 판매하여 실적급 형식의 수당을 받는 경우는 그 대리점이나 회사 소속의 「① 상용근로자」(1년 이상 근로 시) 또는 「② 임시·일용근로자」(1년 미만 근로 시)로 분류
학습지 교사의 종사상 지위는?	회사소속의 「① 상용근로자」(1년 이상 근로 시) 또는 「② 임시·일용근로자」(1년 미만 근로 시)로 분류
집에서 본인의 컴퓨터로 여러 회사의 상품을 선전해 주고 판매실적에 따라 돈을 받는 경우 종사상 지위는?	「③ 자영업자」로 분류
대리운전 사무실에 매일 일정한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며 월 일정액 월급을 받을 경우는?	「① 상용근로자」(1년 이상 근로 시)또는 「② 임시·일용근로자」(1년 미만 근로 시)로 분류
트럭을 구입(자기트럭)하여 고물상에 폐품을 수집하여 주는 사람의 종사상지위는?	「③ 자영업자」로 분류

## 2. 본 통계와 관련된 주요용어 및 해설서

### 1) 거처

- 거처는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를 지칭하며,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거주 단위를 말한다.
- 거처는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로 구분한다.
- 보다 친숙한 용어의 사용을 위하여 본 조사의 조사표에는 거처가 ‘집’으로 표기되어 있다.
- 거처 유형



### (1) 주택

- 주택이란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① 영구 또는 준영구 건물
  - ② 부엌과 한 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음
  - ③ 다른 가구의 주거부분을 통하지 않는 독립된 출입구를 갖춘

## ○ 주택의 종류

### ① 일반단독주택

- 통상 한 가구가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 세든 가구가 있더라도 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 화장실이 별도로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그 집은 일반단독주택에 해당

### ② 다가구단독주택

-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설계된 주택
- 각 구획마다 방, 부엌, 출입구, 화장실이 갖추어져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기가 불가능한 주택
- 전체층이 3층 이하이고, 전체층(각 층) 바닥 면적의 합(연면적)이 660㎡(200평) 이하인 경우

### ③ 영업겸용단독주택

- 주거용 부분과 영업용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 중 주거 부분이 영업용 부분과 같거나 더 많은 건물의 주택(주거용 면적 ≥ 영업용 면적)

### ④ 아파트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5층 이상의 영구건물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공동주택
- 4층 이하라도 아파트로 허가 받은 건물, 주상복합아파트는 아파트에 해당

### ⑤ 연립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
- 동당 건물 연면적이 660㎡(200평)을 초과하는 경우

### ⑥ 다세대주택

- 한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
- 동당 건물 연면적이 660㎡(200평) 이하인 경우
- 주택별로 각각 분리하여 등기가 가능하며 매매 또는 소유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가구단독주택과 다르고,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연립주택과는 구분됨

### ⑦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

- 주거를 목적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지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의 요건(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을 갖추고 있는 주택(주거용 면적 < 영업용 면적)
- 상가, 학원, 공장 등 영업을 목적으로 지은 집이지만 살림하는 부분이 주택의 요건을 갖추었으면 비거주용건물 내 주택에 해당

○ 주택의 구분

주택명	층수	연면적	특징	비고
일반 단독주택	3층 이하	330㎡ 이하	1인 소유 주거형태	-
다가구 단독주택	3층 이하	660㎡ 이하	1인 소유 주거형태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는 것이 불가능
영업겸용 단독주택	-	-	주거부분이 50% 이상	-
아파트	5층 이상	-	-	-
연립주택	4층 이하	660㎡ 초과	2~4층의 빌라, 맨션 등 포함	규모가 다세대보다 조금 크고 아파트보다 작음
다세대 주택	4층 이하	660㎡ 이하	-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는 것이 가능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	-	비주거용건물내 주택으로, 주거용면적<영업용면적	-

(2) 주택 이외의 거처

⑧ 오피스텔

-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된 건축물로 주거시설을 갖춘 사무실
- 주거 용도가 아닌 사무 용도로만 쓰일 경우, 조사 대상에서 제외

⑨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 대실료를 내고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해당
- 숙박업소의 투숙객은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지만, 3개월 이상 거주자는 조사대상에 포함됨(3개월 이상 거주한 주인은 조사대상에 해당)

⑩ 고시원

- 원래는 고시나 공무원 임용 시험 등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시설이었지만 비용이 다른 주거 시설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수험생 이외의 사람들도 많이 찾고 있는 주거시설의 한 형태
- 고시텔, 원룸텔, 미니텔, 미니원룸, 리빙텔 등으로 불림

⑪ 판잣집, 비닐하우스, 창고, 컨테이너, 공장·작업장·상점안의 방(간이시설)

- 주거용도로 사용되지만 건축 재료나 구조측면에서 주택의 요건(영구성)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
- 공장이나 상점안의 잠만 자는 방 포함

⑫ 기타

- 사람이 거주하지만 이상의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건물
- 동굴 등 임시적 거주를 위한 구조물이나 위에서 예시되지 않은 주택이외의 거처

## 2) 가구

○ 가구는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 가구와 혼동하기 쉬운 개념

### ① 주민등록상 세대

- 주민등록상 세대는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과 다르게 등록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만 포함하는 가구와 개념이 다르다.

### ② 가족

- 가족은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한 집안을 이룬 사람들의 집단이지만, 가구는 혈연관계와는 상관없이 주거와 생계를 같이하는 단위이다.

○ 가구 수 구분

### ①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 1가구로 조사한다.

- 부모, 자녀, 친척 등이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 주인가구와 함께 생활하는 5인 이하의 하숙생, 가사 사용인(가정부, 운전사 등) 또는 종업원으로 구성된 경우

### ② 취사, 취침 등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 가구로 분리하여 조사한다.

- 친척이 같은 집에서 살고 있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 주인가구와 숙식을 달리하는 자취생인 경우

○ 조사대상 제외가구

### ① 가족이 아닌 6인 이상의 집단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주인가구와 생계를 같이 하는 6인 이상의 하숙생, 가사 사용인 또는 종업원은 별도의 가구로 보며, 해당가구는 집단가구이므로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가구 유형 및 대상적격여부

유 형	내 용	대상적격여부
일반가구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적 격
	가족과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적 격
	가족이 아닌 5인 이하의 남남이 함께 사는 가구	적 격
	1인가구	적 격
집단가구	가족이 아닌 6인 이상 19인 이하의 가구	부 적 격
	가족이 아닌 20인 이상의 가구(집단시설 가구)	부 적 격
외국인 가구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적 격

### ○ 수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어 ① 생계급여, ② 주거급여, ③ 의료급여, ④ 교육급여, ⑤ 해산급여, ⑥ 장제급여, ⑦ 자활급여 등을 제공 받는 가구를 의미한다.

### 3) 가구주 및 가구원

#### ○ 가구주

- 가족관계등록부나 주민등록상의 가족관계 또는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대표하고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생계책임자를 말한다.
- 생계책임자는 단순히 가구원 중에서 소득이 제일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
- 가구주가 되는 경우는 현재 가구에서 분가하여 생계를 따로 하는 경우와 기존 가구주의 사망 등으로 생계를 책임지게 되는 경우가 있다.

#### ○ 가구원

- 한 가구에서 함께 살고 있는 구성원을 의미한다.
-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더라도 같이 살고 있지 않으면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 주민등록은 함께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이 살고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된다.
-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최근 3개월 이상 되었고, 조사당시에도 함께 살고 있으면 가구원에 포함된다.

#### ○ 가구원 포함 여부

##### ① 가구원에 포함되는 사람

- 출장, 친지 방문, 여행, 행사, 입원, 환자 간호 등으로 잠시(3개월 미만) 집을 떠나 외지(국내, 국외)에 있는 사람
- 선박, 항공기, 철도, 시외·관광버스 등의 탑승 승무원
- 예비군 훈련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
-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직업군인
- 구직이나 무단가출 등으로 집을 떠나 정착 여부를 알 수 없는, 떠난 지 1개월이 되지 않는 가족
- 숙식을 함께 하는 가사도우미 및 종업원
- 외국인, 외지에 살고 있는 배우자, 5인 이하의 하숙생

##### ②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 군인 및 전투경찰, 의무경찰 등으로 입대한 가족
- 학업 또는 직장 때문에 외지에서 살고 있는 가족
- 보육원, 노인요양시설, 특수 병원, 부녀 보호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가족
- 직장 등으로 외지에서 살고 있는 배우자(기러기 아빠, 주말 부부 등)

### 3. 조사표(견본)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 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 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2021년 당진시 주거실태조사



## 인 사 말 씀

당진시에서는 한국도시연구소와 공동으로 『2021년 당진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당진시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2021년 8월 6일 ~ 2021년 8월 31일 기간 중 실시되며, 조사 결과는 당진시의 주거실태 파악과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오니 안심하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 ※ 조사표 작성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한국통계진흥원) 김종록 부장, 이영숙 팀장  
(한국도시연구소) 김준희 책임연구원, 김기태 연구원
- 전 화 : 042-484-9554 (한국통계진흥원 조사관리부)  
042-485-2227 (한국통계진흥원 대전지역본부)

※ 아래는 조사원이 기입하는 난입니다.

읍·면·동	조사구 번호	거처 번호	가구 번호
	□ □ □ □ - □	□ □ □ □	□ □ □ □

조사원 성명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구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입니다.</li> <li>• 설문은 가구주가 아니어도 가구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가구원이 응답할 수 있습니다.</li> </ul>
--------	--	------	--



■ 객관식 문항의 경우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는 1개의 번호에만 표시해 주십시오.

## I 가구의 주거실태

1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1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다중주택 포함)

2 아파트

3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4 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등) 내 주택

5 오피스텔

6 숙박업소의 객실, 판잣집, 비닐하우스

7 기타 ( )

2 지상, 지하, 옥상 중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1 지상

2 지하(반지하)

3 옥상(옥탑)

3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실제 사용하는 주거용 면적은 몇 제곱미터(m<sup>2</sup>)입니까?

- 주거에 이용하는 부분만 기입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 면적이 아닌 전용 면적 기준으로 기입합니다.
- 주택의 일부분을 세를 준 경우 세 준 면적은 제외하고, 차고·창고·허간 등은 제외합니다.

m<sup>2</sup>

4 사용하고 있는 방과 거실은 몇 개인지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1) 잠을 자는 방  개

2) 기타 용도의 방(서재, 옷방 등)  개

3) 거실  개

5 주거 시설에 대해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유무·종류	사용형태
1) 부엌	① 입식 ② 재래식 ③ 없음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2) 화장실	① 수세식 ② 재래식 ③ 없음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3) 목욕시설(욕조 또는 샤워기)	① 온수 ② 비온수 ③ 없음	① 단독사용 ② 공동사용





**14** 현재 살고 있는 동네의 주거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구 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1) 시장, 상점 등 유통시설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병원 등 의료시설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3) 문화시설 및 공원, 놀이터를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주차시설이 양호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소방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인도 등 보행환경이 양호하다	①	②	③	④	⑤
8)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①	②	③	④	⑤
9) 치안이 양호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청소 및 쓰레기처리 상태가 양호하다	①	②	③	④	⑤
11) 이웃과의 관계가 좋다	①	②	③	④	⑤

**15** 현재 살고 있는 동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순서대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 1순위만 기입하셔도 됩니다.

1순위		2순위	
-----	--	-----	--

- |                               |                          |
|-------------------------------|--------------------------|
| <b>1</b> 노후주택 개량 및 빈집 정비      | <b>2</b> 공용주차장 설치        |
| <b>3</b> 소방도로 · 보행로 확보        | <b>4</b> 방범시설 설치 및 치안 강화 |
| <b>5</b> 쓰레기처리 개선 및 깨끗한 환경 유지 | <b>6</b> 상하수도 · 배수로 정비   |
| <b>7</b> 마을경관 가꾸기             | <b>8</b> 기타 ( )          |

**16**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우선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공공시설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순서대로 기입하여 주십시오.

• 1순위만 기입하셔도 됩니다.

1순위		2순위	
-----	--	-----	--

- |                    |                            |                         |
|--------------------|----------------------------|-------------------------|
| <b>1</b> 가로등, CCTV | <b>2</b> 사회복지관             | <b>3</b> 경로당            |
| <b>4</b> 보건 및 의료시설 | <b>5</b> 국 · 공립 어린이집, 아동센터 | <b>6</b> 공원, 놀이터, 야외 쉼터 |
| <b>7</b> 도서관       | <b>8</b> 체육관, 문화관          | <b>9</b> 다문화 · 이주민 지원센터 |
| <b>10</b> 기타 ( )   |                            |                         |



## 가구의 주거비 부담

**17**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직전에 살던 집은 자기 집입니까? 셋집입니까?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행복주택 등)은 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에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현재		직전	
----	--	----	--

- 1** 자가      **2** 전세      **3** 월세, 사글세, 일세      **4** 공공임대      **5** 무상

**18**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거비 부담 관련 문항입니다. <현재 주택가격>은 자가가구만, <임차료>는 임차가구만 응답해 주십시오. <월평균 공과금과 관리비>는 모든 가구가 응답해 주십시오.

- 현재 주택가격은 매매 당시의 가격이 아닌 현재의 시세를 의미합니다.
- 사글세, 일세의 경우는 월세로 환산하여 기입합니다.
- 월평균은 지난 1년(2020년 1월 1일~12월 31일) 동안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 공과금에는 수도요금·전기요금·난방비·취사용 연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1) 현재 주택가격		□□	억	□□□□	만원	
임 차 료			2) 전세 보증금		□□	억	□□□□	만원
	3) 월세	보증금		□□	억	□□□□	만원	
		매달 월세				□□□□	만원	
		4) 월평균 공과금과 관리비				□□□□	만원	

**19** 현재 살고 있는 집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가구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 보유에 해당합니다.

- 1** 보유      **2** 미보유

**20** 지난 1년(2020년 1월 1일~12월 31일) 동안 주거비가 부담스러웠습니까?

- 주거비에는 임차료, 공과금과 관리비, 주거비 마련을 위한 대출의 원리금 상환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4**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20-1** 지난 1년(2020년 1월 1일~12월 31일) 동안 주거비 부담 때문에 식료품비를 줄인 적이 있습니까?

- 1** 있다      **2** 없다

※ **21** ~ **23** 문항은 민간주택 임차 가구(전세, 월세)에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자가, 공공임대주택, 무상 거주 가구는 **24** 문항으로 이동합니다.)

**21**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소유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까?

• 아파트와 오피스텔 거주 가구는 동일 호수에 임대인이 같이 거주하는 경우만 '1 그렇다' 로 응답합니다.

**1** 그렇다

**2** 아니다

**22** 최근 2년(2019~2020년) 이내에 임차료 상승으로 이사를 하거나 전세를 월세로 변경한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23** 향후 임차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려달라고 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1** 올려주고 계속 산다 →

**23-1** 상승된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입니까?

**1** 저축 등 여유자금으로 올려준다

**2**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아서 올려준다

**3** 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세로 돌린다

**4** 기타 ( )

**2** 이사한다 →

**23-2** 이사할 집은 어떤 형태로 마련할 계획입니까?

**1** 매입

**2** 전세

**3** 월세

**4** 모름

**23-3** 어느 지역으로 이사할 계획입니까?

**1** 당진시 내

**2** 당진시 외 충청남도

**3** 서울시·경기도

**4** 기타 ( )

**5** 모름





## V 가구 현황

32 귀댁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1 가족(친척포함)으로 이루어진 가구 →

32-1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만 선택해 주십시오.

1 조손가족

2 한부모가족

2 가족(친척포함)과 남이 함께 사는 가구

3 1인가구

4 가족이 아닌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33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의 만 나이를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 2021년 8월 6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만 나이를 기입합니다.
- 가구주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와 상관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1번 가구원(가구주)

만  세

2번 가구원

만  세

3번 가구원

만  세

4번 가구원

만  세

5번 가구원

만  세

6번 가구원

만  세

7번 가구원

만  세

8번 가구원

만  세

34 아래에 해당하는 가구원이 있는지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구 분	있다	없다
1) 장애인(장애인 복지카드 소유자)	①	②
2) 외국인 또는 귀화 한국인	①	②
3)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①	②

35 가구주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자

2 여자



**4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수급가구입니까?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한 가지 이상의 수급가구를 의미합니다.

**1** 그렇다 →

**42-1** 받고 있는 급여를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5** 기타 ( )

**2** 아니다 →

**42-2** 수급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

**42-2-1** 선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해서 **2**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3** 이유를 모르겠음 **4** 기타 ( )

**2** 없다



●●●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응답 내용에 대해 추가로 질문이 있을 경우에만 전화번호를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b>응답자</b>	성명		전화번호	
------------	----	--	------	--

## 4. 통계법 등 주요 조항

### 제25조(자료제출명령)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② 통계청장은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실지조사)

- ①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을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 ②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에 있어 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또는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39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통계종사자(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자
  2. 제2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4.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5.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수집·보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 다만, 통계작성기관 내부에서 내용검토 절차 또는 통계작성기법에 따라 조사오류 또는 입력오류 등을 수정 또는 변경한 자를 제외한다.
- ② 제27조의2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예정일 전날 낮 12시 이전에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